고　　시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 - 007호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, 군산, 대불, 동해, 율촌, 김제,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6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28.

산업통상부 장관

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

1. 적용범위

○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

2.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(분기별)

○ 마산자유무역지역 : 135.75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군산자유무역지역 : 32.80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대불자유무역지역 : 18.65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동해자유무역지역 : 50.40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율촌자유무역지역 : 29.12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김제자유무역지역 : 14.01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○ 울산자유무역지역 : 36.06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
3.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

○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.

- 1분기 : 1월 1일 ~ 3월말까지
- 2분기 : 4월 1일 ~ 6월말까지
- 3분기 : 7월 1일 ~ 9월말까지
- 4분기 : 10월 1일 ~ 12월말까지

○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,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.
단,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○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.

○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부　　칙 -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3. (폐지고시)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- 16호(2025. 2. 19.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